



**장수군**  
JANGSU COUNTY

# 군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호외 2023. 1. 27.(금)

## 조 례

장수군 조례 제2645호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1
장수군 조례 제2646호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3-74호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9
------------------	---

## 공 고

장수군 공고 제2023-70호	도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24
------------------	--

회 람									
--------	--	--	--	--	--	--	--	--	--

장수군 조례 제2645호

##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월 27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수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 기간에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읍·면
2.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면
3.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한 읍·면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는 읍·면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장수군 종합발전계획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② 기본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6조에 따른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 계획에 의거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3.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
4. 중심소재지 정비사업
5. 기반 시설 확충사업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담당 부서장, 일자리 및 지역경제 담당 부서장, 건설 담당 부서장, 문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장수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관내 지역간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균형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장수군 조례 제2646호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월 2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제16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p> <p>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이하 “<u>안전심의 등</u>”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li> <li>2. <u>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li> <li>3. <u>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li> <li>4. <u>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임직원</u></li> </ol>	<p>&lt;삭 제&gt;</p>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  
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  
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  
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  
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  
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  
자”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  
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  
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않으면 장수군의회 또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삭 제>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

<삭 제>

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장수군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장수군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장수군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장수군의회, 장수군의 집행

<삭 제>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5(수의계약체결 제한 및 신고) ① 의원은 장수군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장수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장수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삭 제>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변경)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연 1회 제8조의 겸직 신고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3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0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삭 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2.6.2.시행)을 반영하여 상기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조항 삭제 (제10조)

장수군 공고 제2023-74호

##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우리군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위탁운영이 한정적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임시거주시설 활성화와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위탁운영이 한정적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안 제21조제1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02. 0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398(063-350-5714)

3) 전자우편(이메일) : hyewonee8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350-2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조례 제 호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귀농·귀촌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를 “법인·단체, 개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16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u>귀농·귀촌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u>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1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 ----- ----- <u>법인·단체, 개인</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장수군 공고 제2023 - 70호

## 도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도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조사 등의 업무와, 같은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0일

장 수 군 수

### 1. 사업 개요

#### 가. 사업의 목적

- 하천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집중호우시 주택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고자함.

#### 나. 사업의 명칭 : 도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다. 사업의 위치 :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1-1 외 , 무농리 826 외 일원

라. 사업의 규모 : 하천 호안정비 L=1.37km, 교량 8개소

마. 사업의 기간 : 2022. 11월 ~ 2025. 5월 [30개월]

\* 현장여건상 동절기, 농번기, 우기철 등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바.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장수군수(안전재난과)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2. 대상물건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1-1 등 56필지(붙임)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붙임)

다. 출입구간 :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1-1 등 56필지

라. 출입기간 : 2023. 01. 20. ~ 사업종료 시까지

마.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s://www.jangsu.go.kr/index.jangsu>)의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 3.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01. 20. ~ 2023. 02. 04.(15일간)

나. 열람장소 : 장수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보상담당자 : 063-350-2513, 사업담당자 : 063-350-2491)

다. 관계도서 : 용지도 및 용지조서 ※ 열람기간 내 비치

라.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열람기간 내에 별도 첨부된 “주민의견(이의신청) 제출서”에 의거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으로 서면 제출

### 4.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는 2023년 2월~3월 내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금 산정하여 개별통지 예정.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평균치 금액으로 결정하고 협의계약 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23년 3월 이후)할 예정입니다.

### 5. 감정평가의 선정방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되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 별도 서식인 「감정 평가업자 추천 요청서」 참고

##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 (개별통보) →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7. 기 타 사 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장수군청)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인정고시 및 관계도서,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주민의견(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청 자연재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담당자 : 063-350-2513, 사업담당자 : 063-350-2491, FAX : 063-350-5717]

- 붙임 1.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각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청서(서식) 1부.

### 용 지 조 서 (1)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등기부등본 소유자		권리	비고
	군	면(읍)	리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1	장수	장계	송천	371-1	답	420.0	159.0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2-3	이*영		
2	"	"	"	368	답	711.0	246.0	경기도 누진시 평안도 96면길 23, 407동2106호(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4단)	김*선		
3	"	"	"	367	답	414.0	179.0	경기도 누진시 평안도 96면길 23, 407동2106호(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4단)	김*선		
4	"	"	"	902	답	2,939.3	114.2	장수군 장계면 장계신기길 56-4	하*열		
5	"	"	"	903	답	1,151.0	70.1	장수군 장계면 장계신기길 56-4	하*열		
6	"	"	"	901	답	1,605.2	96.3	장수군 장수읍 관두길 16, 101동1206호(장수북동주공아파트)	송*철		
7	"	"	"	900	답	2,318.0	125.7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539-2	이*재		
8	"	"	"	899	답	1,902.3	49.4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93-1 극동아파트 102동203호	강*욱		
9	"	"	"	898	답	1,993.5	45.1	장수군 계내면 송천리 674	이*태		
10	"	"	"	897	답	1,950.7	62.8	장수군 계내면 송천리 653-1	고*표		
11	"	"	"	896	답	1,950.6	61.7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택지개발지구 7블럭 도시개발아파트 705동1202호	고*환		
12	"	"	"	895	답	1,071.3	42.4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669	한*열		
13	"	"	"	377-4	잡	400.0	7.0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406	전*수		
14	"	"	"	377-1	창	200.0	112.0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406	전*수		
15	"	"	"	378-1	답	568.0	159.0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80-5	문*두		
16	"	"	"	890	답	2,257.2	94.2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89-3 명진로얄맨션 203호	이*근		
17	"	"	"	889	답	4,484.3	602.4	장수군 계내면 장계리 522	이*철		
18	"	"	"	888	답	2,312.0	439.0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33, 508동204호(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	이*생		
19	"	"	"	887	답	737.3	44.6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33, 508동204호(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	이*생		
20	"	"	"	886	답	3,109.0	194.4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688-1	정*순		
21	"	"	"	885	답	2,332.3	147.3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90-1 인후꿈마을부영아파트 208-805	김*식		
22	"	"	"	894	답	1,380.6	59.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3번길 9, 301호(송죽동)	강*귀		
23	"	"	"	893	답	1,479.8	7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3번길 9, 301호(송죽동)	강*귀		
24	"	"	"	892	답	2,733.3	220.1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8-23	이*승		
25	"	"	"	891	답	1,207.5	70.3	하남시 덕풍동 398-13	이*봉		
26	"	"	"	864	답	4,496.5	402.9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68-36	이*기		
27	"	"	"	863	답	4,974.9	445.5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68-36	이*기		
28	"	"	"	862	답	4,988.5	446.8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132	정*모		
29	"	"	"	861	답	2,569.4	214.9	장수군 장계면 문화로 53, 102동101호(덕유빌라)	한봉원		

### 용 지 조 서 (2)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등기부등본 소유자		권리	비고
	군	면(읍)	리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30	"	"	"	884	답	782.2	49.3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28-3	이*식 외1명		
31	"	"	"	883	답	3,442.3	186.7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28-3	이*식 외1명		
32	"	"	"	882	답	2,801.0	116.5	장수군 계내면 송천리 645-1	이*관		
33	"	"	"	860	답	1,156.3	93.7	장수군 계내면 송천리 700	강*창		
34	"	"	"	859	답	1,275.8	101.9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1길 36-8	이*두 외1명		
35	"	"	"	858	답	1,847.1	145.7	장수군 계내면 송천리 540-2	강*석		
36	"	"	"	857	답	3,163.1	243.1	장수군 계북면 백암길 51-15	한*기		
37	"	"	"	856	답	1,211.8	93.0	장수군 계북면 매계길 27	송*봉		
38	"	"	"	855	답	3,817.6	289.3	장수군 계북면 매계길 27	송*봉		
39	"	"	"	854	답	1,937.3	151.8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693	김*수		
40	"	"	"	853	답	3,085.8	271.2	장수군 장계면 의암로 632-3	서*수		
41	"	"	"	852	답	4,955.5	422.3	장수군 계내면 송천리 407	권*만		
42	"	"	"	851	답	1,848.1	193.5	장수군 계내면 장계리 311-1	이*욱		
43	"	"	"	850	답	3,309.6	650.3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36-10	이*홍		
44	"	"	"	741-2	답	2,235.0	370.0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252	양*성		
45	"	"	"	741-1	답	1,999.0	860.0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252	양*성		
46	"	"	무농	826	답	2,483.7	263.0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36-10	이*홍		
47	"	"	"	825	답	2,382.6	219.7	장수군 장계면 문화안길 13-7	우*철		
48	"	"	"	824	답	3,031.9	227.7	장수군 장계면 북동2길 14	김*경		
49	"	"	"	823	답	1,049.7	63.7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69 연꽃마을금호타운 305-1303	홍*철		
50	"	"	"	822	답	3,040.1	165.3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03-4 은일로즈힐아파트 1103	임*영		
51	"	"	"	821	답	1,911.1	121.4	장수군 계내면 장계리 312-6	이*홍		
52	"	"	"	820	답	2,868.8	127.8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64-13	박*환		
53	"	"	"	819	답	2,535.5	147.6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529-1 파크빌라 에이-202	박*욱		
54	"	"	"	818	답	4,705.9	346.3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05	안*열		
55	"	"	"	817	답	1,457.2	107.9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91	김*만		
56	"	"	"	816	답	6,015.6	665.2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528	육*휘		
합 계						129,007.1	11,676.3				

편 입 지 장 물 집 계 표

연번	속 점	대 표 지 번	수 량							세부사항	소유자	비고
			한전주	통신주	보조지주	건물	비닐하우스	수목	인삼밭			
1	NO.0+0.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1-1(답)						16		이태영	
2	NO.1+6.5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7-1(창)				20.5				조립식건물	전태수
3	NO.1+13.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8-1(답)				21.1				컨테이너	문학두
	NO.2+0.0						1				함석	
4	NO.12+17.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895(답)					2				한중열
5	NO.14+0.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894(답)							108		강형귀
6	NO.15+0.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927(친)						9			농림축산식품 부
7	NO.34+0.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853(답)					3				서정수
8	NO.36+0.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852(답)					5				권중만
9	NO.37+0.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919(도)						10			농림축산식품 부
10	NO.40+0.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920(친)						18			농림축산식품 부
11	NO.42+0.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920(친)				6.7				컨테이너	농림축산식품 부
합 계							48.3	11	53	108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이의신청) 제출서**

사 업 명	도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71-1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감정 평가업자 추천 요청서

■ 사업명 : 도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를 상기 사업의 손실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법 인 명	주 소	전화/팩스	비 고 (감정평가사 성명, 연락처)

◎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 평가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평가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붙임 토지소유자 동의자 명단 1부

- 성 명 : (인)

- 도로명주소 :

- 전 화 번 호 :

2023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 하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필면면적	우편 주소	성명	서명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군보발행안내

###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